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

의 안 번호 21-145 제안연월일: 2021. 11. 26.

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2조)

나.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:

다. 조례안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구의회사무국의 일· 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
- 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 당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급한다.
 -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포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4조(시행규칙)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□ 지방공무원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72호, 2021. 10. 8., 일부개정]
제46조(실비보상 등)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.